래미안

래미안 길음뉴타운 9단지 입주자모집공고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성북구 뉴타운사업과-7089호(2007. 8. 3)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공 급 위 치: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10-1번지 일대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지하3층, 지상29층 15개동 1,012세대 중 343세대(재개발 조합공급세대 중 일반공급분) 및 부대복리시설(임대 3개동, 242세대 별도)
  (일반 특별공급 : 82.5700㎡-2세대, 79.9200㎡-11세대, 79.5900㎡-9세대 총 22세대 포함)
  (3자녀특별공급 : 82.5700㎡-1세대, 79.9200㎡-3세대, 79.5900㎡-3세대, 143.2400㎡-3세대 총 10세대 포함)
- 공급면적 및 공급금액

(단위㎡, 천원/부가세 포함)

구분	아파트 코드		주택관리번호(모델번호)	주택형	세대별계약면적					대지지분	공급세대수	층별	향	분양가격			총분양금액	계약금(계약시)	중도금						잔금(입주지정일)
	무주택우선	일반			세대별공급면적			세대별기타공용면적(지하주차장 등)	계					대지비	건축비	계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전용	주거공용	소계												2007.12.11	2008.5.14	2008.10.4	2009.3.30	2009.9.5	2010.3.10	
민영주택	21311-01	21312-01	2007000643 (01)	82.5700	59.92	22.65	82.57	37.78	120.35	30.44	2	1	남향	150,705	184,195	334,900	334,900	66,980	33,490	33,490	33,490	33,490	33,490	33,490	66,980
											2	2		155,385	189,915	345,300	345,300	69,060	34,530	34,530	34,530	34,530	34,530	34,530	69,060
											2	3		158,535	193,765	352,300	352,300	70,460	35,230	35,230	35,230	35,230	35,230	35,230	70,460
											6	4-6		161,640	197,560	359,200	359,200	71,840	35,920	35,920	35,920	35,920	35,920	35,920	71,840
											8	10층이상		164,790	201,410	366,200	366,200	73,240	36,620	36,620	36,620	36,620	36,620	36,620	73,240
	21311-02	21312-02	2007000643 (02)	79.9200	59.96	19.96	79.92	37.82	117.74	30.46	4	1	남동향	141,480	172,920	314,400	314,400	62,880	31,440	31,440	31,440	31,440	31,440	31,440	62,880
											4	2		145,845	178,255	324,100	324,100	64,820	32,410	32,410	32,410	32,410	32,410	32,410	64,820
											4	3		148,815	181,885	330,700	330,700	66,140	33,070	33,070	33,070	33,070	33,070	33,070	66,140
											24	4-9		151,740	185,460	337,200	337,200	67,440	33,720	33,720	33,720	33,720	33,720	33,720	67,440
											80	10층이상		154,665	189,035	343,700	343,700	68,740	34,370	34,370	34,370	34,370	34,370	34,370	68,740
	21311-03	21312-03	2007000643 (03)	79.5900	59.98	19.61	79.59	37.83	117.42	30.47	2	1	남향	145,485	177,815	323,300	323,300	64,660	32,330	32,330	32,330	32,330	32,330	32,330	64,660
											2	2		149,985	183,315	333,300	333,300	66,660	33,330	33,330	33,330	33,330	33,330	33,330	66,660
											2	3		153,000	187,000	340,000	340,000	68,000	34,000	34,000	34,000	34,000	34,000	34,000	68,000
											9	4-9		156,015	190,685	346,700	346,700	69,340	34,670	34,670	34,670	34,670	34,670	34,670	69,340
											24	10층이상		159,030	194,370	353,400	353,400	70,680	35,340	35,340	35,340	35,340	35,340	35,340	70,680
											2	3	동향	145,620	177,980	323,600	323,600	64,720	32,360	32,360	32,360	32,360	32,360	32,360	64,720
											12	4-9		148,500	181,500	330,000	330,000	66,000	33,000	33,000	33,000	33,000	33,000	33,000	66,000
											34	10층이상		151,335	184,965	336,300	336,300	67,260	33,630	33,630	33,630	33,630	33,630	33,630	67,260
		21312-04	2007000643 (04)	143.2400	114.86	28.38	143.24	72.45	215.69	58.35	4	1	남서향 / 남동향	319,680	390,720	710,400	710,400	142,080	71,040	71,040	71,040	71,040	71,040	71,040	142,080
											6	2		329,850	403,150	733,000	733,000	146,600	73,300	73,300	73,300	73,300	73,300	73,300	146,600
											6	3		336,600	411,400	748,000	748,000	149,600	74,800	74,800	74,800	74,800	74,800	74,800	149,600
											26	4-9		343,395	419,705	763,100	763,100	152,620	76,310	76,310	76,310	76,310	76,310	76,310	152,620
											46	10층이상		350,190	428,010	778,200	778,200	155,640	77,820	77,820	77,820	77,820	77,820	77,820	155,640
		21312-05	2007000643 (05)	142.1800	114.91	27.27	142.18	72.48	214.66	58.37	2	1	남동향	320,850	392,150	713,000	713,000	142,600	71,300	71,300	71,300	71,300	71,300	71,300	142,600
											2	2		331,065	404,635	735,700	735,700	147,140	73,570	73,570	73,570	73,570	73,570	73,570	147,140
											2	3		337,860	412,940	750,800	750,800	150,160	75,080	75,080	75,080	75,080	75,080	75,080	150,160
											6	4-6		344,655	421,245	765,900	765,900	153,180	76,590	76,590	76,590	76,590	76,590	76,590	153,180
											2	10층이상		350,595	428,505	779,100	779,100	155,820	77,910	77,910	77,910	77,910	77,910	77,910	155,820
		21312-06	2007000643 (06)	165.8600	134.99	30.87	165.86	85.15	251.01	68.58	2	1	남동향	373,725	456,775	830,500	830,500	166,100	83,050	83,050	83,050	83,050	83,050	83,050	166,100
											2	2		385,650	471,350	857,000	857,000	171,400	85,700	85,700	85,700	85,700	85,700	85,700	171,400
											2	3		393,570	481,030	874,600	874,600	174,920	87,460	87,460	87,460	87,460	87,460	87,460	174,920
											8	4-7		401,535	490,765	892,300	892,300	178,460	89,230	89,230	89,230	89,230	89,230	89,230	178,460
											4	10층이상		409,455	500,445	909,900	909,900	181,980	90,990	90,990	90,990	90,990	90,990	90,990	181,980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및 선택 옵션판매가

(단위㎡, 천원/부가세 포함)

주택형(㎡)	확장면적(㎡)	확장공사비		확장부위	확장형선택옵션			기타 선택 옵션						비 고
		확장공사	㎡단가		거실아트월 + 거실장	홈오피스	붙박이장	현관아트홀	천정형 에어컨 1개소 추가	2개소 추가	3개소 추가	4개소 추가	안방 붙박이장	
82.5700	18.83	8,400	446	거실주방침실 2,3	3,000	1,200	2,400	300	1,350	2,700	-	-	2,300	•확장형선택옵션 선택은발코니확장선택 시에 한함 •확장형선택옵션 붙박이장은홈오피스선택 시에 한함 •천정형에어컨은 침실2, 3, 4, 주방 4개소에 각각 설치할수있음 -개소 추가별금액은실외기/실내기용량 등을 감안하여 반영함 -4개소 설치시실외기가1대 추가로설치되어야함 (판매가포함)
79.9200	18.01	9,100	505	거실주방침실 2,3	2,700	2,100	1,700	300	1,350	2,700	-	-	2,300	
79.5900	18.21	8,600	472	거실주방침실 2,3	2,800	2,100	1,700	300	1,350	2,700	-	-	2,300	
143.2400	29.93	12,000	400	거실주방침실 2,3,4	3,900	2,000	-	320	1,350	3,850	5,300	7,000	2,700	
142.1800	29.99	12,700	423	거실주방침실 2,3,4	3,900	2,000	-	320	1,350	3,850	5,300	7,000	2,700	
165.8600	34.50	16,100	466	거실주방침실 2,3,4	4,100	2,200	-	150	1,350	2,500	4,200	5,800	3,000	

*발코니 확장 공사비 (부가가치세 포함)는 확장으로 인해 기존설치항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설치항목 증가비용이 정산된금액임
*총분양금액에는 일반외부샷시 포함금액이며, 발코니 확장 공사비에는 일반외부샷시 금액이 차감된 금액임
*발코니 확장 공사및 선택 옵션사항은 필수사항이 아님.(입주자 개인의 선택사항이며, 아파트 공급계약과는 별도 계약사항임)

▣ 공통사항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 실시에 의하여 당사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 상기 공급금액은 주택형별 가격이며, 세대별 분양가격은 층별, 향별, 개방감 등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차등 적용하오니 견본주택이나 배포된 인쇄물을 참고하시기 바람.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등록세, 취득세가 미포함 되었으며,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 상기 세대당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층수는 건립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고임.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아파트인 경우 전체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한다)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2회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중도금 납부 기준공정시점 이후 납입일자는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이어야 함)
-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6조에 의거 납부할 수 있음.
- 사업주체가 장래에 대한주택보증(주) 또는 대한주택보증(주)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입주시 지적정리에 따라 대지면적 확장시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서울특별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상기 아파트는 최초 계약체결가능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가 제한됨.

▣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1) 특별공급

■ 일반 특별공급

- 신청일시/장소 : 2007. 8.13 (10:00 ~ 14:00) / 당사 견본주택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 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07. 8. 8)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며 단체기관장의 추천을 받으신 분. [무주택세대주]
- 구비서류
  -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07. 8. 8)현재 무주택세대주 입증서류(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중 1통)
  - 해당기관장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 특별공급대상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1통(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주민등록초본 1통(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수도권지역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이 주민등록등본 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호적등본 1통(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가 아닌자에 한함.)
  - 장애인등록증 사본(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가 아닌자에 한함)
  - 무주택서약서(접수장소에 비치) - 신분증 - 인감도장
- 일반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2항 2호에 의해 단체 기관장의 추천을 받으신 분 중 무주택세대주(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에게 전용면적 85㎡이하 주택공급 세대수(일반분양분)의 10%범위내에서 특별공급함.
- 주택형별 일반 특별공급 세대수

길음뉴타운 9단지 (일반 특별공급)	82.5700㎡	79.9200㎡	79.5900㎡	계
	2	11	9	22

■ 3자녀 특별공급

- 신청일시/장소 : 2007. 8.13 (10:00 ~ 14:00) / 당사 견본주택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6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07. 8. 8)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면서 만 20세 미만의 직계 자녀 3명이상을 둔 무주택세대주 (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주)
  - 단,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는 세대주가 아니어도 이를 세대주로 간주함.
  - 입주자 선정방법 :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 구비서류
  - 특별공급신청서(접수장소에 비치) - 주민등록등본 1통(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주민등록초본 1통(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수도권지역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이 주민등록등본 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배점기준표(접수장소에 비치)
  - 호적등본 1통(자녀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지 아니한자, 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가 아닌자에 한함.)
  - 장애인등록증 사본(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가 아닌자에 한함)
  - 무주택서약서(접수장소에 비치) - 신분증 - 인감도장 - 피부양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3년이상 주소변동내역 표시분)
- 주택형별 3자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주택형별 3자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는 50%는 서울시 거주자에게 공급하며, 나머지는 인구비율(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의 2005년도 내국인 인구통계에 의함)에 따라 경기도 거주자에게 40%, 인천시 거주자에게 10%를 각각 공급함.
- 거주지역별 3자녀 특별공급 세대수

길음뉴타운 9단지 (3자녀 특별공급)	구 분	82.5700㎡	79.9200㎡	79.5900㎡	143.2400㎡	계
	서울시 거주자	1	2	2	2	7
	경기도 거주자		1	1	1	3
	계	1	3	3	3	10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된 자는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에는 신청할 수 없음.
* 일반 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으로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특별공급신청 미달 시 잔여세대는 일반공급으로 전환함.
* 3자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신청이 가능하며, 중복당첨된경우에는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여 일반공급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 처리됨.
* 특별공급 신청 미달시에는 잔여물량을 일반공급으로 전환함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2) 일반공급

-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2007. 8. 8) 현재 서울특별시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거나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무주택우선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주) 또는 20세 이상인 자【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인, 외국국적의동포)및 외국인 포함】
- 서울특별시 주택건설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청약예금을 가입한 후 서울특별시 주택건설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자는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주택건설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변경하여야 청약이 가능함. (단,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거주자가 주거지 변경없이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증액 변경없이 거주지역 해당 청약예치금으로 청약 가능함)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여부와 무관하게 당첨계좌재사용이 불가함.
- 무주택 우선공급및 1순위 주택 당첨자중 주택소유부적격자로 당첨이 취소된 경우에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 청약신청시 1순위 청약제한을 받을 수 있음.
- 과거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기 당첨된 자 또는 기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재당첨제한기간이 경과되어야만 1,2,3순위 자격으로 청약이 가능함.

3) 순위별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구분	순위	면적구분 (전용면적)	청약관련예금	거주구분	접수일자	청약접수 장소/시간	추첨 및 당첨자발표
민영주택	무주택 우선공급	85㎡ 이하	- 다음 요건을 모두 구비한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공급함 •만 35세이상이고 5년이상 무주택세대주 •85㎡이하 또는 102㎡이하 민영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최초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포함)이나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청약자격 1순위가 되신 분 •과거 5년이내에 다른주택에 당첨[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세대원 전원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당첨사실 포함]된 사실이 없는 분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2007. 8. 14	- 접수 장소 :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www.kbstar.com · 국민은행 외 청약통장 가입자 : www.apt2you.com · ARS/모바일 청약 : 아래의 청약신청 안내 참조 - 접수 시간 : 08:30~18:00	- 일시 : 2007. 8. 23 - 장소 : 당사견본주택 및 래미안 홈페이지 - 2007. 8. 23 서울경제신문에 게재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개별 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 (전화문의는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순위	85㎡ 이하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경과하고 납입인정 금액이 85㎡이하 민영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 - '80.8.29 이전 국민은행(舊주택은행)의 재형저축에 가입하였거나 '81.5.22이전 국민주택 청약부금 가입자중 청약자격 1순위자로서 최초입주자모집공고전일까지 청약예금으로전환한 분				
		전주택형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경과한 분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후 신청일 현재1년이 경과한분 (전용면적85㎡ 초과주택에 한함)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순위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1순위청약제한 대상자 :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가입한 1순위자로서 다음중 1에 해당되는 분은 1순위 청약불가 (2순위로 청약가능) •과거 5년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청약자본인,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당첨사실 포함]된 사실이 있는 세대에 속한 분 •2002.9.5 이후청약예금 또는청약부금 가입자 중 세대주가 아닌분(2002.9.5 포함) •2주택이상을 소유한청약자 본인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한 세대에 속한 분 (*주택소유에 관한유의사항 참조)				
	2순위	85㎡ 이하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민영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순위 자격을 취득한 분으로서 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민영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 중 최초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2007. 8. 16		
		전주택형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분 -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가입한 1순위자중 상기 1순위 청약이 불가한 분				
	3순위	전주택형	- 1순위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분		2007. 8. 17	- 접수장소: · 국민은행인터넷/ARS/모바일 - 접수시간: 평일 : 08:30~18:00	

※ 노약자, 장애인, 인터넷 취약자등에 대하여는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가능(창구 접수시간 : 09:30~16:30)

▣ 인터넷 · ARS · 모바일 청약신청 안내

구 분		국민은행(舊주택은행 포함)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이용 대상	공 통	•1, 2순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순위가 발생한 분 •3순위 : 뱅킹계좌에 3순위 청약신청금 이상의 잔고가 있는 분 (단, 국민은행통장거래고객에 한함)	
	인터넷 · ARS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인터넷 뱅킹, 폰뱅킹 (국민은행에한함)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	
	KB모바일	•국민은행 Mbank, Kbank, BankOn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Mbank 전용휴대폰 중 WIPI폰 기종만 이용가능)	
이용 방법 및 절차	인터넷	•홈페이지(www.kbstar.com) 접속 ▷ 부동산 ▷ 분양관 ▷ 사이버청약지점 ▷ 인터넷 청약	•청약통장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www.apt2you.com)
	ARS	•전화 : 1588-9999(서비스번호 : 702)	
	KB 모바일 청약	•SKT : Mbank 접속 ▷ KB Starnet ▷ 모바일주택청약 ▷ PIN입력 ▷ 주택청약신청 •KTF, LGT : KB뱅킹 접속 ▷모바일주택청약 ▷ PIN입력 ▷주택청약신청	

▣ 경과기간 및 요건

- 전용면적 85㎡초과 102㎡이하 민영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청약부금 가입자의 경우 85㎡이하 민영주택에 청약신청이 가능함.
-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요건 - 청약예금(청약부금은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에 한함)에 가입하여 가입일(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경우는 전환일, 기예치금액을 변경한 경우는 변경일)로부터 2년 경과시마다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금액은 현행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 함.
- 신청가능 전용면적변경한 분 신청요건
  1)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한 분: 최초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청약신청 가능
  2) 큰 주택으로 변경한 분 :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경과한 자는 변경 후 면적만 신청가능(단, 1년 미만인 자는 변경 전 면적 신청 가능)
  3)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최초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변경한 경우 청약신청가능
- '94.8.15이전 청약저축에 가입한 1순위자로서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전일까지 전용면적85㎡이하 청약예금으로 차액을 추가 예치하고 전환하면 1순위 청약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함.

▣ 신청접수 방법

- 입주자 선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순위에 의함.
- 층별, 동별, 향별 구분없이 주택형별로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를 구분하여 청약순위별로 같은 날짜에 접수하며, 선순위 신청자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는 접수하지 않음.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주택형별로 일반공급대상 주택수의 75%를 무주택우선공급 대상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무주택 우선공급 신청자 접수결과 미달된 세대는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함.

※ 청약 신청시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

▣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1.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함.
2.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세대주,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3.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 등본상 처리일)기준임.
4. 주택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됨.
5.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됨.
6.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나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 하다가 다른 주택 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① 사용검사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② 85㎡이하의 단독주택
     ③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 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모집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 또는 주택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모집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20㎡이하의 주택(아파트 제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 청약신청시 은행에서는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해 확인없이 인터넷(창구 신청자: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에 입력한 내용으로만 청약접수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세대주 기간, 주택소유여부 등)을 신청전에 정확히 파악하시고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자격 기재방법
  - 거주개시일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 등,초본으로 확인한 주택건설지역(시,군 단위) 의 전입일을 기재
  - 무주택세대주 기간 : 무주택기간과 주민등록 등,초본으로 확인한 세대주 인정기간을 감안하여 기재
    ※ 세대주 기간은 세대주가 아닌 기간을 차감한 전후기간등을 합산할 수 있으나 무주택기간은 연속적이어야 함.
  -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격 착오 기재등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할 경우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창구청약자 구비사항

구 분	구 비 사 항
본인 신청시 (배우자포함)	•주택공급신청서(1, 2순위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비치, 3순위 : 국민은행에비치) •청약예금 청약부금 통장(1, 2순위자에 한함) •예금인장(1, 2순위자에 한함) 또는 서명 •배우자가 신청시 배우자 입증서류(배우자 관계 확인이 가능한 호적등본 등) •청약신청금(제3순위 신청자에 한함) •본인확인증표 - 주민등록증(본인 또는 배우자)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 외국인은외국인등록증
제3자 대리 신청시	•본인 및 배우자 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존 · 비속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인감도장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 (양식은 신청접수 장소에 비치) - 대리신청자의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가능

※ 상기 제증명서류중 주민등록 등 · 초본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3개월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단, 주민등록상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3순위 청약신청금

구 분	전용면적 85㎡ 이하	전용면적 102㎡ 초과 135㎡ 이하	신청금 납부방법
청약신청금	200만원	400만원	창구 청약시 신청금액에 해당되는수도권지역 소재 금융기관 발행 자기앞수표 1매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3순위 청약신청금 환불

환불기간	환불장소	구비서류	
당첨자발표 익영업일 (2007. 8. 24이후) (평일 09:30 ~ 16:30)	청약접수한 국민은행 본지점	본인 또는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 접수(영수)증 (당첨자는 원본 및 사본 추가제출) - 주민등록증 - 신청시 사용인감 또는 본인 · 배우자 서명(서명으로 신청한 분에 한함)
		제3자 대리 환불시	상기 환불시 구비서류 외에 추가구비 사항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청약신청금 환불위임용) 1통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제3자의 주민등록증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3순위 청약신청금에 대한 환불금은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
※ 3순위 당첨자의 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으니 청약접수한 국민은행 본지점에서 환불받아 별도로 계약체결 하여야 함(단 지정계좌(청약자 본인의 국민은행 계좌)에 한함)로 이체 신청하신 분은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에 자동 이체 됨).

▣ 입주자 선정방법 및 동 · 호수 결정

구 분	선정방법 및 동 · 호수 결정
특별공급	- 2007. 8. 13일 16:00 당사 견본주택에서 특별공급 신청자의 입회 하에 동 · 호수를 결정하되, 신청자가 없거나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입주자를 선정함. - 특별공급 대상자는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별하지 아니하며, 부적격세대는 일반 예비당첨자에게 관계법령에 의거 공급함.
무주택 우선공급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일반공급대상 주택수의75%를 무주택우선공급대상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무주택우선공급신청자 중 낙첨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지역 일반 1순위자와 함께 잔여세대에 대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공 통 (무주택우선 및 일반공급)	- 국민은행 전산 추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 · 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 - 동일 신청자격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서울특별시 주택건설지역 거주 신청자가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 거주자로 신청하신분은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입주자 모집결과 경쟁이 있는 경우 각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20% 범위내에서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여 미계약세대 또는 계약 취소세대 발생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일에 당사 견본주택에 별도 공고함.

※ 재개발 조합원에 기 배정된 동 · 호수를 제외한 나머지 동 · 호수에 대하여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신청자를 대상으로 동 · 호수를 결정함.

▣ 3자녀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

평점요소		총 배점	배점기준 기준	점수	비 고
계		100			
자녀수(1)	미성년자녀	40	4자녀이상	40	자녀입양아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20세 미만인 경우만 포함
			3자녀	35	
	영유아	10	2명 이상	10	영유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인 자녀
			1명	5	
세대구성(2)		10	3세대 이상	10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 (직계존속은 배우자의직계존속을 포함하며, 3세대는 직계존속으로 구성)
			2세대	5	
무주택기간(3)		20	세대주 나이가 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20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세대주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무주택자 기준은 주택공급규칙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름)
			세대주 나이가 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5년 이상	15	
			무주택기간 · 5년 미만	10	
당해 시 · 도 거주 기간(4)		20	10년 이상	20	세대주가 당해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시는 특별시 · 광역시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 · 경기 · 인천지역 전체를 당해 시 · 도로 봄)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1년 미만	5	

(1), (2) : 주민등록등본이나 호적등본으로 확인. (3) : 건교부 등 주택소유 전산검색을 확인 (4) : 주민등록등본이나 주민등록 초본으로 확인
*동점자 처리 : 1. 미성년 자녀수가많은 자 2. 자녀수가 같을 경우 세대주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입주예정일 및 중도금납부 기준 공정시점

- 입주예정일 : 2010년 9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은 추후 통보,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예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인정하지 않음.)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 건축 : 담 종합건축사사무소 / 삼십칠억구천일백구십구만삼백일십구원정 (₩3,791,990,319 VAT포함)
- 전기,통신, 소방 : (주)동도이엔씨 / 오억칠천오백만원정(₩ 575,000,000 VAT별도)

▣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 계약기간 : 정당 당첨자 2007. 8.28 ~ 8.30. 3일간, 평일 09:30~16:30
- 계약체결 장소 : 당사 견본주택
- 계약금 납부 : 은행명 - 우리은행(계좌번호 :1005 -901 - 202427) 예금주 : 삼성물산㈜ (무통장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요망)
- 융자 알선 : 계약금 20% 납입 후 전체분양대금의 40% 범위내에서 융자 알선
  (단, 개인별 총 부채상환비율(DTI), 개인의 대출결격사유(신용불량 대출한도초과 등) 등으로 대출이 불가할 경우에는약정된 분양금을 직접 납부하여야 함.)

※ 무주택우선공급 및 1순위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
※ 정당 당첨자계약종료 이후 미계약세대 발생시 예비당첨자에게 순번에 따라 우선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하여 자격제한 없이 임의분양함.

▣ 계약시 구비사항

구 분	구 비 사 항
공 통	•주택공급신청접수증 및 영수증(단, 인터넷, ARS, 모바일 청약신청 당첨자는 제출 생략) •계약자 인감증명서(용도 : 아파트계약용) 1통 •인감도장 •계약금(수도권소재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자기앞수표 1장으로 준비하시기 바람) •본인확인 및 신청자격 확인서류(거주지역 세대주, 20세 이상 여부 등) -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등 초본 1통(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호적등본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 무주택우선공급 청약자의 경우 5년 이상 세대주 기간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초본 1통 제출(단, 초본 발급시 세대주와의 관계 반드시 명기) - 재외동포는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1통)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사본 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통) - 호적등본1통(미혼 · 이혼 · 사별 · 배우자와 분리세대 등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기준으로 배우자 유무확인이 불가능한 자의 경우 및 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장애인인 직계존속을부양하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 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 장애인 수첩 또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1부(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 자격을 인정받고자하는 분에 한함) - 주택소유현황서약서(견본주택 비치)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서류 - 건물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 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3자 대리 계약시 추가구비사항	•본인이외에는 모두 제3자로 간주하며(배우자, 직계 존 · 비속 포함) 상기 구비서류 외에 아래 서류 추가 제출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아파트 계약위임용) 1통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계약장소에 비치)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

※ 상기 제증명서류는 계약일 기준 3개월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발급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계약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외국인 등의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공급신청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해야 함)
※ 2005.7.1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란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란에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조건 등

- 사업주체에서 당첨자에 한하여 세대주, 거주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와 다르게 당첨되어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예금 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관리됨.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1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예금 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함.
  - 무주택 우선공급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5년이내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
  - 1순위 당첨자 중 최초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2주택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자로 판명될 경우
  - 무주택 우선공급 당첨자 및 1순위 당첨자 중 과거 5년이내 다른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세대에 속한 자
  - 2002.9.5이후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가입한 1순위 당첨자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가 아닌 자로 판명될 경우
  - 1, 2, 3순위 당첨자 중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당첨된 자 또는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로 재당첨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판단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을 포함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각각 동일한 청약관련예금으로 청약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당해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관리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 청약신청시 1순위 청약신청에 제한을 받음.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함.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체결된 계약은 취소함.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하여야 함.
- 입주 개시전 특정일자를 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점검토록 할 예정임.
-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문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탑승위치 등) 등은 사업계획 승인도서의 내용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분양대금 납부계좌

길음뉴타운 9단지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우리은행	1005-901-202427	삼성물산㈜

▣ 발코니 확장공사비 및 선택 옵션 대금 납부계좌

길음뉴타운 9단지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우리은행	1005-301-202425	삼성물산㈜

▣ 연대보증인 : 대한주택보증(주)

길음뉴타운 9단지	보증기간	보증금액	보증서 번호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136,057,680,000원	제01282007-101-0010100호

▣ 분양보증약관 중 주요내용

- 보증채무의 내용 : 보증회사는 주택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책임을 부담합니다.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 입주금의 납부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차명, 이중계약등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한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 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 납부계좌를 변경 · 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 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입주자모집공고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양선택품목(예시: 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부위, 기타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6조의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② 보증회사가 제8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납부한 잔금중 전체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 유의사항

1. 부대복리시설 : 노인정, 관리사무소, 어린이놀이터 등
2. 청약시 신청한 내용과 민영주택공급신청접수(영수)증(창구청약자 : 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지된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대조 확인하시기 바람
3.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하거나 청약예금 예치금액을 보다 작은 규모의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 당해 주택에 공급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변경한 자에 한하여 가능하며 향후 다른 주택을 공급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하여주시기 바람
4. 세대주로 인정되는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주민등록말소 등으로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그 말소 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기간을 전후하여 세대주로 등재되어있는 기간을 합산하여 이를 인정하며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 세대주의 세대주 인정기간을 변경 후 세대주의 세대주 인정기간에 합산하여 이를 변경된 세대주의 세대주 인정기간으로 함. - 세대주가 사망, 결혼 또는 이혼한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존, 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5. 본 주택의 당첨자(3순위 당첨자 및 계약미체결자포함)는 향후 신청주택에 따라 일정기간 청약순위가 제한됨.
6. 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음.
7.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함.
8.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공급신청을 하는 경우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서명〉은 신청자의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반드시 접수창구에서 은행 직원 입회 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함.
9. 청약 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주택의 당첨을 취소함.
10.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 될 수 있음.
11. 이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 받게 됨.
12. 세대 당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정산하기로 함.
13. 본 주택은 세대별 쓰레기 투입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
14.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 모집공고상〈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15.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 평형 환산방법 : 형별면적(㎡)× 0.3025 또는 형별면적(㎡) / 3.3058
16.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이상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17.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18.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철거하며 철거 전에 비디오로 견본주택 내부를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임.
19. 마감자재내용은 형별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을 참조하시기 바람.
20.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 될 수 있음.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 4항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인허가를 진행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치 아니함.
21.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면적 증감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22. 일반 분양시에 제시된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등 각종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진행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시행인가 또는 설계의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인 재개발 조합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함.
23.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확장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은 아파트 계약시 별도 상담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확장시공을 원하는 입주자들은 분양시 공개된 금액 범위 내에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에 따라 체결하여야 하며, 시공상에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계약이 불가함.
24. 확장형은 평면 및 형별 특성에 따라 청소용 수전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음.
25. 아파트 외관 구성상 일부세대의 전후면 발코니 등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음.
26. 배치상 정화조 및 쓰레기 분리수거함 인접세대에는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27. 분양받을 주택이 일조권 및 조망권,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을 침해받을 수 있으며, 또한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28. 주변 단지의 신축, 단지 내 시설물의 변경 등과 배치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어린이 놀이터, 관리동 및 노인정 등의 설치로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29.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단지 내 비상 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 소음 및 전조등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30. 단지의 배치상 일부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량이 진입할 수 없음.
31.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될 수 있음.
32.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 될 수 있음.
33.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시 구조체 및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34. 단지 외곽의 돌쌓기 위치 및 형태는 인 · 허가과정 또는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35.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 경비실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견본주택관내 모형 참조)
36.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37. 단지 각 차량 및 보행자 출입구의 차별화 디자인은 공원 디자인과 연계되어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38. 측량에 따라 대지주위 도로 폭, 단지 내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수목, 수경시설, 조경시설, 포장 등), 단지레벨차에 따른 옹벽의 형태 및 위치 등이 변경 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설계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39. 각 동의 저층부 세대는 가로등 야간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40. 인 · 허가, 실시공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전후면 외관, 측벽, 발코니 앞 장식물, 창틀모양 및 색, 색채), 난간의 디테일, 경비실, 문주, 부대복리시설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세대 발코니 앞에 장식물이 추가 부착될 수 있고, APT 측벽문양은 현장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41. 연도형상가에 설치되는 어닝 및 플랜트박스는 대관 인 · 허가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42. 연도형상가는 향후 기능개선을 위하여 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43. 아파트 동 번호순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44. 대피공간의 창호는 열림방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45. 보일러실의 점검구 문 위치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46. 아파트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47.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로 인한 차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변동 시 공급가격에 의해 정산 처리함.
48. 배치상 기계전기실 급배기구, 정화조 및 쓰레기 분리수거함 인접세대에는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49.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상의 결과에 따라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길음뉴타운 9단지 분양계약서 설계관련 유의사항을 필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주택법 제46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사업구역내에 확보된 공공용지는 토지이용 계획상 택지로서 향후 관할구청에서 별도 사업추진 예정이며, 사업계획에 의해 토지이용계획,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이 결정 됩니다.

▣ 인터넷, ARS 당첨자 발표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 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발표장소 등에서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국민은행	금융결제원
인터넷	이용방법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부동산 ▷ 분양관 ▷ 사이버청약지점 ▷ 당첨확인	금융결제원홈페이지(www.apt2you.com)접속 ▷ 청약센터 ▷ 당첨자조회
	이용기간	2007. 8. 23 ~ 9. 1(10일)	2007. 8. 23 ~ 9. 1(10일)
전화(ARS)	이용방법	먼저 이용전화번호를 누르신 후 안내 말에 따라 청약자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연속하여 누르세요	
	전화번호	전화 1588-9999 (서비스코드 704)	전화 1369(서비스코드 5#)
	이용기간 및 시간	2007. 8. 23 ~ 9. 1(10일)	2007. 8. 23 ~ 9. 1(10일)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국민은행 주택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자	
	제공일시	2007. 8. 23 (08:3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주체명 : 정릉길음제9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등록번호 : 209-81-41529)

▣ 시공업체명 : 삼성물산㈜ 건설부문(주택건설지정업 지정번호 제48호)

▣ 견본주택 위치 및 분양안내 : 서울시 종로구 운니동 114-2번지 래미안 갤러리 [☎ 02-765-3327, 1588-3588]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분양문의 02)765-3327 | 고객센터 1588-3588

시행사 **정릉길음제9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시공사 SAMSUNG **삼성물산** 건설부문